

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7 - 제73호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7. 10. 29.

제 출 자 : 사 천 시 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청 및 읍·면·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따라 동사무소가 주민생활 중심으로 기능이 전환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명칭변경(동사무소→동주민센터) 지침시달에 따라 읍면동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대로 개정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본 조례의 제명과 제1조 및 제2조중 ‘읍·면·동사무소’ 를 ‘읍·면·동의 사무소’ 로 규정하도록 개정함.(안 제1조, 안 제2조)

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5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
나. 예산조치 : 제2회 추경 10,200천원(특별교부세)

다. 합 의 : 기획감사담당관실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2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07. 10. 2 ~ 10. 22(20일간) / 접수 의견
없음

나) 예고방법 : 일간신문 및 시청홈페이지 게시 공고

다) 예고문안 : 따로 붙임

3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강화 등 없음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사천시청 및 읍·면·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사천시청 및 읍·면·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”를 “사천시청 및 읍·면·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

제1조중 “읍·면·동사무소”를 “읍·면·동의 사무소”로 한다.

제2조중 “읍·면·동사무소”를 “읍·면·동의 사무소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사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중 “읍면동사무소”를 “읍·면·동의 사무소”로 한다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	
제2조(청사 및 사무소 소재지)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.		제2조(청사 및 사무소 소재지)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.		

“당 초”

[별표] <개정 06. 11. 10, 07. 4 .30>

시청 및 읍·면·동사무소 소재지

기 관 명	소 재 지	비 고
사 천 시	용현면 덕곡리 501번지	
사 천 읍	사천읍 평화리 29번지	
정 동 면	정동면 대곡리 299번지	
사 남 면	사남면 화전리 1316-3번지	
용 현 면	용현면 송지리 288-1번지	
축 동 면	축동면 배춘리 772-30번지	
곤 양 면	곤양면 성내리 194-1번지	
곤 명 면	곤명면 봉계리 990-8번지	
서 포 면	서포면 구평리 656-2번지	
동 서 동	서동 272-4번지	
선 구 동	선구동 116-1번지	
동서금동	동금동 337-5번지	
별 용 동	별리동 27-13번지	
향 촌 동	향촌동 837-2번지	
남 양 동	송포동 353-4번지	

“변 경”

[별표] <개정 06. 11. 10, 07. 4 .30>

시청 및 읍·면·동의 사무소 소재지

기 관 명	소 재 지	비 고
사 천 시	용현면 덕곡리 501번지	
사 천 읍	사천읍 평화리 29번지	
정 동 면	정동면 대곡리 299번지	
사 남 면	사남면 화전리 1316-3번지	
용 현 면	용현면 송지리 288-1번지	
축 동 면	축동면 배춘리 772-30번지	
곤 양 면	곤양면 성내리 194-1번지	
곤 명 면	곤명면 봉계리 990-8번지	
서 포 면	서포면 구평리 656-2번지	
동 서 동	서동 272-4번지	
선 구 동	선구동 116-1번지	
동서금동	동금동 337-5번지	
별 용 동	별리동 27-13번지	
향 촌 동	향촌동 837-2번지	
남 양 동	송포동 353-4번지	

관계 법령 발췌

【지방자치법】

[일부개정 2007.5.17 법률 제8435호]

제6조 (사무소의 소재지) ①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·면·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동은 [제4조제5항](#)에 따른 행정동(行政洞)을 말한다.

②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.

【지방자치법 시행령】

[일부개정 2006.10.17 대통령령 제19702호]

제6조 (사무소의 소재지) [법 제6조](#)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결정하되, 특별시, 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서는 시(「[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](#)」 [제15조제2항](#)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군 또는 자치구를 단위로 결정하고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읍·면 또는 동을 단위로 결정한다. [개정 94·7·6, 95·7·1, 2006.6.29] [[시행일 2006.7.1]]